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1565 |
|----------|------|

2020년 6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3. 상정일자 :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6월 1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 제안이유

-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에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

돌봄 환경 조성,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스페이스 살림을 추가함(안 제4조).

-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기능으로 창업공간, 자금,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 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 자녀돌봄 서비스 제공, 가족 소통 활성화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조의2).
-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제19조 및 별표 6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입법예고('20. 4. 2.~4. 22.) 결과: 의견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및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창업공간, 자금,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 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 자녀돌봄 서비스 제공, 가족 소통 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임.

2 주요사항 검토

□ 시립 여성관련시설로 규정 (안 제15조의2 신설)

- 개정안은 스페이스 살림의 명칭과 내용을 시립 여성관련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안 제4조 1의2), 그 기능을 규정(안 제5조의2)하였음.
 -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1)를 근거로 스페이스 살림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조례」 제29조2)에 따라

1)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성평등 조례」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별도의 조례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을 위한 그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p>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생략)</p> <p><신설></p> <p>2. ~ 5. (생략)</p> <p>6. 그 밖에 <u>제 1호 내지 제5호</u>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p> <p><신설></p> | <p>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 ----- ----- -----.</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u>스페이스 살림: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및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u></p> <p>2. ~ 5.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 <u>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의2호</u>----- ----- -----</p> <p><u>제5조의2(스페이스 살림의 기능)</u> <u>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현행 | 개정안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창업공간, 자금,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u> 2. <u>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u> 3. <u>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u> 4. <u>가족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u> 5. <u>정보통신 분야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u> 6. <u>그 밖에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및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u> |

□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 규정 (안 제15조의2 신설)**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³⁾, 지방자치단체는 공

3)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

공시설에 대한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처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 부과·징수 및 이용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p>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u><신설></u></p> | <p>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①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스페이스 살림: 별표 6의 2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u></p> |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 현행 | 개정안 |
|---|--|
| <p>2. ~ 4. (생략)</p> <p>② (생략)</p> <p>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생략)</p> <p><신설></p> | <p><u>금액</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제18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스페이스 살림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창업공간은 제외한다.</u></p> <p>1. <u>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치구는 제외한다):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다만,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u></p> <p>2. <u>「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다만, 연수시설의 경우에는</u></p> |

| 현행 | 개정안 |
|--------|--|
| ② (생략) | <p><u>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u></p> <p>3.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u>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

- 감면 대상에서(안 제19조제2항) 창업공간을 제외하는 것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⁴⁾에 따라 창업자는 공유재산 이용료를 건물평가액의 1/100로 감면받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스페이스 살림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면 m²/1개월당 7,190원⁵⁾으로 개정안의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입주자가 동일한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5) ○ 창업공간 재산가격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구분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창업공간 재산가격 (부지+건물) |
|------------|-----------|-----------|----------------------|
| 해당년도('20년) | 4,201,700 | 3,642,400 | 7,844,100 |

스페이스 살림 이용료 부과 기준(안 별표 6의2)에 따른 창업공간 이용료는 2,280~20,000원(㎡당/1개월)와 비교해 볼 때,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중복 감면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

[안 별표 6의2] 스페이스 살림 이용료 부과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구 분 | | 이용료 부과·징수 기준(단위) |
|----------|------|------------------------|
| 창업공간 이용료 | 창업공간 | 2,280원~20,000원(㎡당/1개월) |

- 한편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의 경우(안 제19조제2항제2호),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플라자의 감면 대상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는 감면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여성창업자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스페이스 살림과 여성단체 교류를 목적으로 여성플라자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으로, 서울시가 이용시 역시 여성창업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만 감면(안 제19조제2항제3호) 하도록 하였음.

- 창업공간 재산가격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재산가격 ① | 사용요율 ② | 산출사용료 ③=①*② | 부가세 ④*10% | 사용료 부과액 |
|-----------|-----------|----------------|--------------|---------|
| 7,844,100 | 1% | 78,441 | 7,844 | 86,285 |

- 최종부과액

| 사용료 부과액 ① | 전용면적 ② | 최종부과액 ③=①/② | 월할계산 (12개월) | 비고 |
|--------------|-----------|----------------|----------------|----|
| 86,285 | 2,084 | 41 | 7,190.43 | |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2020년 9월 개관을 앞둔 스페이스 살림을 시립 여성관련시설의 하나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용료 규정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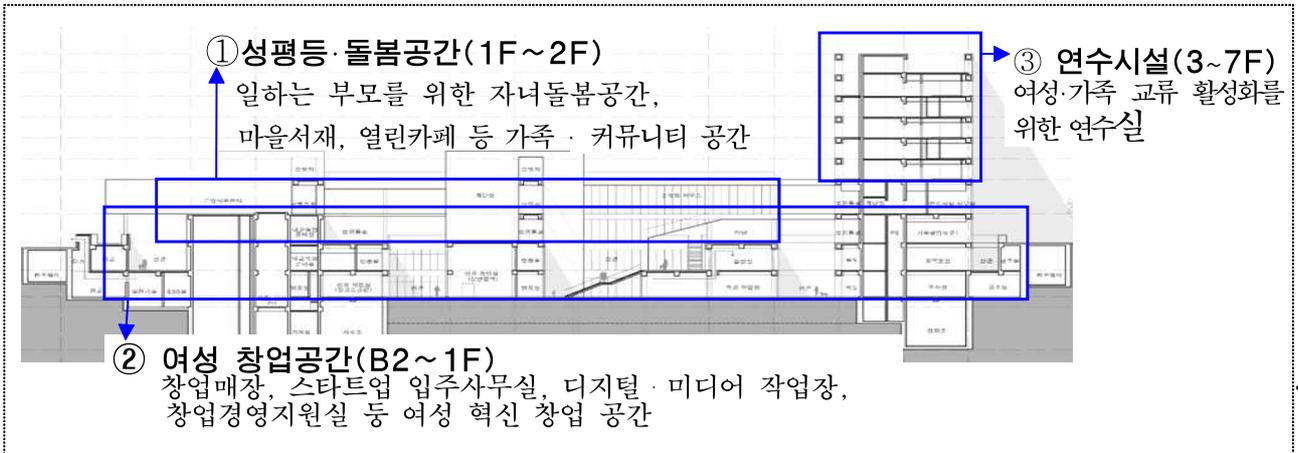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조성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 동작구 대방동 340-4번지 외 3필지
- 규 모 :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17,957㎡)
- 사업기간 : '15년 ~ '20년 9월 ※ 공정률 : 81%
- 주요시설 : 여성창업공간, 성평등·돌봄공간, 열린공유공간
 - 창업공간, 자금, 장비 등 지원으로 '국내 최초 여성창업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시간제 보육, 초등 돌봄 제공,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기간 : 2015년~2020년 9월
- 총사업비 : 1,151억원 (토지 636억원, 공사비 462억원, 설계·감리비 등 53억원)

□ 층별 시설내역

| 구분 | 층별 용도 |
|-------|--|
| 3층~7층 | 연수시설(3~7층) 야외공연장(3층), 옥상텃밭(3층) |
| 2층 | 창업자 입주공간, 마을서재(2층), 열린카페(2층), 교육장 우리동네키움센터(상담실), 식당, 몸마음돌봄공간 |
| 1층 | 창업매장(편집매장, 소름), 공유사무실, 우리동네키움센터, 영유아 시간제 보육시설, 마을서재(1층), 열린카페(1층) 옥외 : 야외놀이터 |
| B1층 | 창업자 입주공간(매장, 사무실), 다목적홀, 주차장 |
| B2층 | 창업자 입주공간(매장, 사무실), 녹음/편집촬영실, 메이커스페이스, 세미나실, 주차장 등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565 |
|----------|------|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에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스페이스 살림을 추가함(안 제4조).

나.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기능으로 창업공간, 자금,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 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가족 소통 활성화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다.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제19조 및 별표 6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4. 2.~4. 22.)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 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의2호”로 한다.

1의2. 스페이스 살림: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및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스페이스 살림의 기능)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공간, 자금,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
2. 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
3.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4. 가족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
5. 정보통신분야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6. 그 밖에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및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18조제1항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스페이스 살림: 별표 6의2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창업공간은 제외한다.

1.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다만,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2.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다만,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3.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제25조 중 “제6호까지”를 “제6호까지 및 제1의2호에”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의2]

스페이스 살림 이용료 부과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구 분 | | 이용료 부과·징수 기준(단위) |
|-------------|------|------------------------------|
| 창업공간 이용료 | 창업공간 | 2,280원~20,000원(m^2 당/1개월) |
| 기본시설 이용료 | 공유좌석 | 10,000원~50,000원(1개월) |
| | 공유부엌 | 7,500원~30,000원(1시간) |
| | 다목적홀 | 52,800원~160,000원(1시간) |
| | 교육장 | 25,000원~65,000원(1시간) |
| 연수시설 이용료 | | 40,000원~230,000원(1박) |

※ 그 밖의 부대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는 원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청구 가능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 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구분한다.</p> <p>1. (생략)</p> <p><u><신설></u></p> <p>2. ~ 5. (생략)</p> <p>6. 그 밖에 <u>제 1호 내지 제5호와</u>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 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p> <p><u><신설></u></p> | <p>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 ----- ----- -----.</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u>스페이스 살림: 여성창업</u> <u>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u> <u>및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목적</u> <u>으로 하는 시설</u></p> <p>2. ~ 5.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 <u>제1호부터 제5호까지</u> <u>및 제1의2호</u>----- ----- ----- --</p> <p><u>제5조의2(스페이스 살림의 기능) 제</u> <u>4조제1의2호에 따른 스페이스 살</u> <u>림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u> <u>다.</u></p> <p>1. <u>창업공간, 자금, 장비 등 여성</u> <u>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u></p> <p>2. <u>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자</u> <u>유치 지원</u></p> <p>3. <u>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자</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u><신설></u></p> <p>2. ~ 4. (생략)</p> <p>② (생략)</p> <p>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생략)</p> <p><u><신설></u></p> | <p><u>녀 돌봄 서비스 제공</u></p> <p>4. <u>가족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u></p> <p>5. <u>정보통신 분야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u></p> <p>6. <u>그 밖에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및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u></p> <p>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u>스페이스 살림: 별표 6의2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제18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스페이스 살림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창업공간은 제외한다.</u></p> |

| 현행 | 개정안 |
|---|---|
| <p>② (생략)</p> <p><u>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u>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u>제6호까지</u>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p> | <p>1. <u>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다만,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u></p> <p>2.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다만,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p> <p>3.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u>제26조(관리·운영의 위탁 등)</u> -----<u>제6호까지</u> 및 <u>제1의2호에</u>-----</p> |

| 현행 | 개정안 |
|----------------|-----------------|
|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 |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1) 스페이스 살림 운영 및 관리 비용

-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주체를 여성가족재단(고유사무)으로 결정(행정1부시장 방침 제348호, 2017.12.26.)함에 따라 출연금으로 경비 지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하여, 관리비가 자체수입을 초과할 경우 시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근거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2) 기준가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스페이스 살림 운영원가계산 분석보고서('19.10, 성도이현회계법인)

3) 추계기간 :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20~'25)

3. 비용추계의 결과(세출)

(단위 : 천원)

| 구분 | | 연도 | 1차년도 ('20) | 2차년도 ('21) | 3차년도 ('22) | 4차년도 ('23) | 5차년도 ('24) | 합계 |
|----------------------|-----------|----|-----------------|-----------------|-----------------|-----------------|-----------------|------------|
| 스페이스 살림 (세출, 출연금) | ○ 운영지출(A) | | 3,969,644 | 5,799,012 | 5,914,992 | 6,033,292 | 6,153,958 | 27,870,898 |
| | ○ 운영수입(B) | | 249,548 | 744,839 | 759,736 | 774,930 | 790,429 | 3,319,482 |
| 비용(A-B) | | | 3,720,096 | 5,054,173 | 5,155,256 | 5,258,362 | 5,363,529 | 24,551,416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스페이스 살림 (세출, 출연금) | 3,720,096 | 5,054,173 | 5,155,256 | 5,258,362 | 5,363,529 | 24,551,416 |
| 민간 | | | | | | |
| 기타 | | | | | | |
| 합계 | 3,720,096 | 5,054,173 | 5,155,256 | 5,258,362 | 5,363,529 | 24,551,416 |

5. 덧붙이는 의견

- 1차년도('20년) 예산은 스페이스 살림 개관 시기('20.9월)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음.
- ※ 개관 준비 시기를 고려하여 인건비는 평균 6개월 편성하였으며, 공간조성을 위한 장비 및 집기류 구입비가 포함되어있음.

6.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우효정(02-2133-503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스페이스 살림 운영 및 관리 비용

- 1) 사업비 : 여성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가족·성평등 돌봄 공간 운영 등
 - 2) 일반관리비 : 인건비, 기본경비(4대보험료, 선택적복지비, 사무경비 등)
- ※ 인건비(신규 49명) :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장(1명), 사업인력(21명), 시설인력(27명)

| 연도 | 항 목 | 내 역 | 예상금액 (천원) | 산출기초 |
|------|-------------|-------|--------------|--|
| 총계 | | | 24,551,416 | |
| 2020 | 비용(A-B) | | 3,720,096 | |
| | 운영 지출(A) | 사업비 | 2,814,361 | ▶ 여성 창업자 발굴 및 육성, 가족 및 돌봄 공간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 대상 창작·공간 운영 등 |
| | | 일반관리비 | 1,155,283 | ▶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 직원 인건비 등 - 운영단장 1, 사업인력 21, 시설인력 27 |
| | | 소계 | 3,969,644 | |
| | 운영 수입(B) | | 249,548 | ▶ 대관수입, 연수시설 수익, 주차장 수입, 임대수입 등 |
| 2021 | 비용(A-B) | | 5,054,173 | |
| | 운영 지출(A) | 사업비 | 2,889,621 | ▶ 여성 창업자 발굴 및 육성, 가족 및 돌봄 공간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 대상 창작·공간 운영 등 |
| | | 일반관리비 | 2,909,391 | ▶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 직원 인건비 등 - 운영단장 1, 사업인력 21, 시설인력 27 |
| | | 소계 | 5,799,012 | |
| | 운영 수입(B) | | 744,839 | ▶ 대관수입, 연수시설 수익, 주차장 수입, 임대수입 등 |

| 연도 | 항 목 | 내 역 | 예상금액 (천 원) | 산출기초 |
|---------|-------------|-----------|---------------|--|
| 2022 | 비용(A-B) | | 5,155,256 | |
| | 운영 지출(A) | 사업비 | 2,947,413 | ▶ 여성 창업자 발굴 및 육성, 가족 및 돌봄 공간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 대상 창작·공간 운영 등 |
| | | 일반관리비 | 2,967,579 | ▶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 직원 인건비 등 - 운영단장 1, 사업인력 21, 시설인력 27 |
| | | 소계 | 5,914,992 | |
| | 운영 수입(B) | | 759,736 | ▶ 대관수입, 연수시설 수익, 주차장 수입, 임대수입 등 |
| 비용(A-B) | | 5,258,362 | | |
| 2023 | 시설 운영 | 사업비 | 3,006,362 | ▶ 여성 창업자 발굴 및 육성, 가족 및 돌봄 공간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 대상 창작·공간 운영 등 |
| | | 일반관리비 | 3,026,930 | ▶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 직원 인건비 등 - 운영단장 1, 사업인력 21, 시설인력 27 |
| | | 소계 | 6,033,292 | |
| | 운영 수입(B) | | 774,930 | ▶ 대관수입, 연수시설 수익, 주차장 수입, 임대수입 등 |
| 비용(A-B) | | 5,363,529 | | |
| 2024 | 운영 지출(A) | 사업비 | 3,066,489 | ▶ 여성 창업자 발굴 및 육성, 가족 및 돌봄 공간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 대상 창작·공간 운영 등 |
| | | 일반관리비 | 3,087,469 | ▶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 직원 인건비 등 - 운영단장 1, 사업인력 21, 시설인력 27 |
| | | 소계 | 6,153,958 | |
| | 운영 수입(B) | | 790,429 | ▶ 대관수입, 연수시설 수익, 주차장 수입, 임대수입 등 |